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및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97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4
다. 관계 기관 의견	19

I. 개요

1.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5.
-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참조하여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사무를 위임받는 업체는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2)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장의2 신설).
- 3)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9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면서,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하고(안 제8조의2 신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리한 대우’에 ‘계약해지’와 ‘계약연장 거절’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 본다.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	제119조(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 사용자

현행	개정안
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절 또는 그-----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을 받는 ‘예술인¹⁾’과 ‘노무제공자²⁾’를 각각 ‘근로자³⁾’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반액을

1)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게 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2010년대 이후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2020~2022년에 걸쳐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각각 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왔는데,

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에도 확대·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 6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우선 추가되었고, 2021년 1월 같은 법이 다시 개정되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정한 같은 법 제104조의11이 2021년 7월 1일 신설된 이후 2022년 1월과 7월에 각각 개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음.

4) 참고로,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492명)의 91.7%는 학습과 숙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최종(3차) 설문조사(2024. 4. 21.)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써 보기로 제시된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음.

<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시행일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2021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2022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캐디 및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⁵⁾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가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2년 6월 법률 제18928호로 개정·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가 새롭게 정의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기존 가입 대상 직종 종사자 중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없었던 노무제공자를 비롯하여 고용보험만 적용되던 직종도 피보험자 범위에 추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음.

5)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22. 6. 10. 삭제]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 ⑪ (생략)

< 노무제공자인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비고
2008년 7월 1일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캐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2012년 5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및 대리운전기사	
2020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및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원)	
2021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원)	전속성 요건 폐지
2023년 7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택송기사, 대리주차원,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024년 1월 1일	○ (기존 가입 대상) +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및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반액을 부담하게 되면 고용여건과 해당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될 경우 이들이 어느 시점에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는 각각 현행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⁶⁾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종료일 등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계규정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119조에 따라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계약해지’와 ‘계약연장 거절’이 포함될 경우 이를 위반한 데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현행법 제128조제3항제3호⁷⁾의 구성요건에도 ‘계약해지’와 ‘계약연장 거절’을 포함하여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넷째,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시점부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

6) 「국민연금법」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면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제12조(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7)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른 ‘근로자’로 보는지 등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등을 부칙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려는 취지에서 한정애의원(제1090호), 전종덕의원(제1619호) 및 김선민의원(제7230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반발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업장이나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5장의2 연금사무대행기관</u> <u>제100조의6(연금사무대행기관) ①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사무(이하 “연금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이하 “연금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연금사무를 중단한 경우 3. 연금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연금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현행	개정안
<신설>	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연금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제100조의8(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연금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연금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신설>	제100조의9(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연금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제100조의10(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 ----- ----- ----- ----- -----사용자, 연금사무대행기관, 가입자----- -----

현행	개정안
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③ (생략)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100조의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⁸⁾에서는 가입자의 종별로 자격의 취득·상실이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등”이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代理)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신고 의무의 대리나 대행(代行)에 관하여는 현행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한편, 공단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등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금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웹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있는데,⁹⁾

실제에서 공단은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이하 “EDI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위탁사업장)이 다른 당연적용사업장(업무대행기관)에 연금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8)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9) 국민연금 EDI 서비스, <<http://edi.nps.or.kr>>.

10)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 “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공단에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업무대행기관으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3. “위탁사업장”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업무대행기관에 사업장

-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당연적용사업장은 공단에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세무법인·노무법인·경영지도법인·행정사법인과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행정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¹¹⁾

업무대행기관은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납부예외 및 재개 포함),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및 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등의 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증명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됨.¹²⁾

- 개정안은 사업장이나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하여야 할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연금사무의 위탁·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법률에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하되,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되려면 공단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수탁자의 연금사무 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의 신고업무 등을 위탁한 사업장을 말한다.

11)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제3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업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1.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포함)
2. 경영지도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지도사 포함), 단, 전문분야가 인적자원관리인 자에 한함
3. 행정사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행정사 포함), 단,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12)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제5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납부예외 및 재개 포함),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및 보험료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하며 증명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참고로, 1983년 12월 법률 제3713호로 개정·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¹³⁾

1993년 12월 법률 제4644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¹⁴⁾

2003년 12월 법률 제7047호로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게 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음.¹⁵⁾

-
- 13) 법률 제37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1983. 12. 31. 공포 1984. 4. 1. 시행>
제19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부당하거나 사무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 14) 법률 제4644호 「고용보험법」 <1993. 12. 27. 공포 1995. 7. 1. 시행>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19조의3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연금사무를 대행한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근거와 그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안 제100조의6제1항 전단에서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기준(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을 현행 대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EDI 처리기준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연금사무를 수탁·대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 중인 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행정사 등의 업역이 축소되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셋째, 현행법령에서는 지역가입자등의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국가나 공단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안 제100조의10에 따라 공단이 연금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게 될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 등으로 한창민의원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9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연금사무의 대행은 사업장의 신청으로 대행기관이 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 행정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로, 법률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낮으며, 특히 인가 절차나 장부비치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 또한, 개정안에 따라 연금사무대행기관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더라도, 현재 국민연금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자격사 중 일부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임의규정이기는 하지만, 지원금 규정(안 제100조의10)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가입자 종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기금 또는 예산이 투입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6